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879호 2022. 9. 28.(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2-105호 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2-1316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

거창군 공고 제2022-1333호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2-33호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5

회 람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28.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학현길 37-42 등 7건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새동네2길 45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위임된 사항 신설과 용어 순화 등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타시군 관련 조례와 균형을 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 사항 조례에 반영(안 제5조)

- 제5조제1항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변경

나. 조례위임사항 반영을 위한 신설(안 제5조제5항)

- 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에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10억
 - 나. 처분의 경우 10억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로 신설한다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조례 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7조·제19조,제24조)

○ 조례 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7조·제19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 허가”로 정비

○ 제24조제5항제1호 중“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정비

4. 예고기간 : 2022. 9. 23.(금) ~ 10. 13.(목)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재무과)

- 전화번호 : 055) 940-3262 / FAX : 055) 940-3219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055)940-32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생년월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한다.

제5조제5항을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에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10억
 - 나. 처분의 경우 10억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로 신설한다

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7조·제19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제24조제5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u>법 제10조</u>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u>법 제10조2</u>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④ (현행과 같음)</p> <p>⑤ <u>법 제10조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u> 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u>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p>제15조(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u>사용·수익</u>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u>사용·수익</u>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 3. <u>사용·수익허가</u> 재산의 보존의무 4. <u>사용·수익허가</u>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p>제15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u>사용</u>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u>사용</u>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u>사용허가</u>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 3. <u>사용허가</u> 재산의 보존의무 4. <u>사용허가</u>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5. 허가조건

현행	개정안
5. 허가조건	
제15조의2(수익계약으로 <u>사용·수익허가</u> 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5조의2(수익계약으로 <u>사용허가</u> 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6조(사용·수익허가대장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u>사용·수익허가대장</u> 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u>사용·수익허가대장</u> 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u>사용허가대장</u>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u>사용허가대장</u> 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u>사용허가대장</u> 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 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u>사용·수익허가</u> 범위 및 위탁내용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 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u>사용허가</u> 범위 및 위탁내용
제19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일시사용·수익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u>사용·수익허가</u> 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일시 <u>사용익허가</u> ,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u>사용허가</u> 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대부료율)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u>실경작자</u> 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24조(대부료율)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u>농업인</u> 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0조(대부료 또는 <u>사용료</u> 감면)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부 칙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3호, 제7조제7항제2호, 제10조의3, 제33조, 제40조, 제78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각 호,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제4조(생략)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2023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제6조(생략)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정수관리대상 물품 현황을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규칙 제41조의2(정수관리 대상 물품) 별표 정비
정수관리대상 물품 변경 "비디오편집기" 삭제, "냉동트럭", 리프트게이트트럭
"신규 추가

4. 예고기간 : 2022. 9. 23.(금) ~ 10. 13.(목)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재무과)

- 전화번호 : 055) 940-3262 / FAX : 055) 940-3219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055)940-32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끝.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 명(단체명) :
- 생년월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거창군 공유재산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수관리 대상 물품(제41조의2 관련)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명	정수책정기준
1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	25101502	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	20101509	승용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25101601	덤프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25101611	화물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25101698	화물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	25101703	구급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	25101789	소방펌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	25101791	소방화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	25101793	구조공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	25101794	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	25101795	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	25101796	무인방수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	25101797	화재조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	25101798	지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	25101799	제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	25101910	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	25101918	저속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	25101926	제설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	25101927	칼슘살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	25101930	조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	25101959	도로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	25101963	노면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	25101969	고소작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	25101981	분무기탑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명	정수책정기준
32	25101986	견인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	25101987	냉동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	25101988	리프트게이트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	25101991	유개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	25101994	탱크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	25101998	발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9	25131899	무인비행기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0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	40101701	냉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	40101715	항온항습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3	40101787	냉난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4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	41104510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	41111703	실체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	41111711	전자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	41115320	신호발생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	41115406	분광광도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3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	43222805	구내교환장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7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60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및 단위조직 수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가.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행정대집행, 계약 등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활용을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특별자문 규정을 신설
 - 나.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기준·절차를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
3. 주요내용
 - 가. 특별자문 규정 신설(안 제3조의 2)
 - 나. 공무원 소송비용 세부지원기준 등 규칙위임 사항 신설(안 제9조)
4. 제정규칙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2. 9. 27. ~ 10. 1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0. 13.(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층 기획예산담당관
- 2) 전화 055)940-3072, 팩스 055)940-3029, 이메일 jg3359@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
【☎(055)940-30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의견 제출서**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규 칙 명 :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2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특별자문)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고문변호사 이외의 변호사에게도 자문할 수 있다.

1.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로 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고소·고발 등을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총 2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기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특별자문의 수행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9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고소·고발 등을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총 2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u>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u></p> <p>1.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p> <p>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③ <u>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u></p>	<p><u>제3조의2(특별자문)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고문변호사 이외의 변호사에게도 자문할 수 있다.</u></p> <p>1. <u>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u></p> <p>2. <u>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로 하는 사항</u></p> <p>3.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제9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고소·고발 등을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총 2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u><삭 제></u></p> <p>② <u>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u></p>

<p>납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된 경우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기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	--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2. 제정이유

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지급기준을 정비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직무관련사건” 추가함(안 제1조·제2조)
- 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신설(안 제22조)
- 다.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신설(안 제23조)
- 라. 수임료 등 신설(안 제24조)
- 마. 비용회수 신설(안 제25조)
- 바. 소송비용지급기준 정비(별표)

4. 제정규칙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2. 9. 27. ~ 10. 1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0. 13.(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층 기획예산담당관
- 2) 전화 055)940-3072, 팩스 055)940-3029, 이메일 jg3359@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
【☎(055)940-30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의견 제출서**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규 칙 명 : 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2 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송에”를 “소송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소송”을 “소송 및 직무관련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직무관련사건”이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2조(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직무관련사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3조(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사건: 해당 사건의 종결 시까지(재판 포함)
2. 민사소송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제24조(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25조(비용회수)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소속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사건 중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직무관련사건 중 민사소송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소송 및 직무관련사건 등의 수행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또는 거창군수를 당사자 등으로 하는 <u>소송</u>에 필요한 절차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신설></u></p> <p>3. (생략)</p> <p>4. “소송대리인”이란 <u>소송</u>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p> <p>5~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또는 거창군수를 당사자 등으로 하는 <u>소송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u> 필요한 절차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u>직무관련사건</u>”이란 <u>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4. “소송대리인”이란 <u>소송 및 직무관련사건</u>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p> <p>5~6. (현행과 같음)</p> <p>제22조(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u>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u></p> <p>1. <u>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직무관련사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u></p> <p>2. <u>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u></p>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제23조(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사건: 해당 사건의 종결 시까지(재판 포함)
2. 민사소송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신설> 제24조(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제25조(비용회수)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소속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사건 중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직무관련사건 중 민사소송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

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구분 소송별	내 용	지 급 기 준	
		착 수 금	승소사례금
민사소송 행정소송	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300,000원 이내 1,000,000원 이내	없음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가. 2천만원 이하 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다.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라.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마.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바. 5억원 초과	1,500,000원 이내 2,000,000원 이내 3,000,000원 이내 3,500,000원 이내 4,000,000원 이내 400만원+(소송물가액-5억원) ×0.5÷100 = 환산금액 이내	승소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3. 중요사건	20,000,000원 이내	
	4. 상고심 및 환송심 가. 본안심리	1심 본안사건에 준함 (다만, 동일 변호사 선임 시 본안사건의 1/2 이내)	
그 밖의 비용		실 비 실 비 실 비 「공무원 여비규정」 중 3급 공무원 해당액 실비	

※ 착수금, 승소사례금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10% 추가지급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 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우리 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운영하고 있는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해 우리 군의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1) 현행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 변경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단서조항 삭제)

나.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8조)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두도록 규정함

현 행	변 경
<p>위촉직 위원 자격</p> <p>1. 군 체육회 <u>및 생활체육회 관계자</u></p> <p>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u>지식이 있는 사람</u></p> <p>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사람</u></p>	<p>위촉직 위원 자격</p> <p>1. 군 체육회 <u>관계자 1명 이내</u></p> <p>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u>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u></p> <p>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사람 1명 이내</u></p>

- 다. 기금운영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조항 신설(안 제9조~10조)
 라. 운영세칙 신설(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6. 입법예고기간 : 2022. 9. 22. ~ 2022. 10. 12. / 20일간

7.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10. 12.(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체육시설사업소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우) 50132
- 전화 : 055)940-8721, FAX: 055)940-8729

-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를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후단을 삭제하고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관계자”를 “군 체육회 관계자 1명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이 있는 사람”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 1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스포츠마케팅 담당주사”를 “기금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제10조·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조(중전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금의 조성) ①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u>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u>」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 5. 그 밖에 수입금 <p>② 군은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p>	<p>제2조(기금의 조성) ①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u>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u>」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 5. 그 밖에 수입금 <p>② 군은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2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7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u><단서 삭제></u></p>
<p>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u><삭 제></u></p>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체육시설사업소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관계자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포츠마케팅담당주사가 된다.

<신 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체육시설사업소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체육회 관계자 1명 이내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내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생략)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기금의 집행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생략)

<삭 제>

<삭 제>

<삭 제>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3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